

#### 4.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4월 9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 상정일자 :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4월 22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2019.12.31.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먼저, 선정대리인 이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시장이 위촉한 선정

대리인에게 무료로 대리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임.

- 본 개정안은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선정대리인 자격과 결격사항, 위촉과 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등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 이 개정조례안은

-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종전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무조사”의 용어 정의를 법 제2조제1항제36호로 이동하여 신설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93조의2제1항9)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적용요건을 각 호로 규정하고, 영 제62조의2제6항10)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위촉대상	▪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 & 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시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추천 요청

- 9)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10)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안 제9조**에서는 영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선정 대리인의 자격, 위·해촉 및 결격요건, 임기, 비밀유지 의무, 인센티브 제공, 실비성 경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실비성 경비 지급(안) : 14만원 정도(대리수행 5, 회의참석 9)  
대구시에서는 개정된 법률이 2020. 3. 2.자로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근 4년간 대구시의 불복 청구 건수를 고려하여 현재 3명의 대리인을 우선 선정하였음.
- ▶ **안 제10조**에서는 청구인들의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구청장·군수의 대리인 추천 요청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시행과 관련한 서식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2014년 처음 도입되어 국세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와의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 제고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 제도 등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등으로 불복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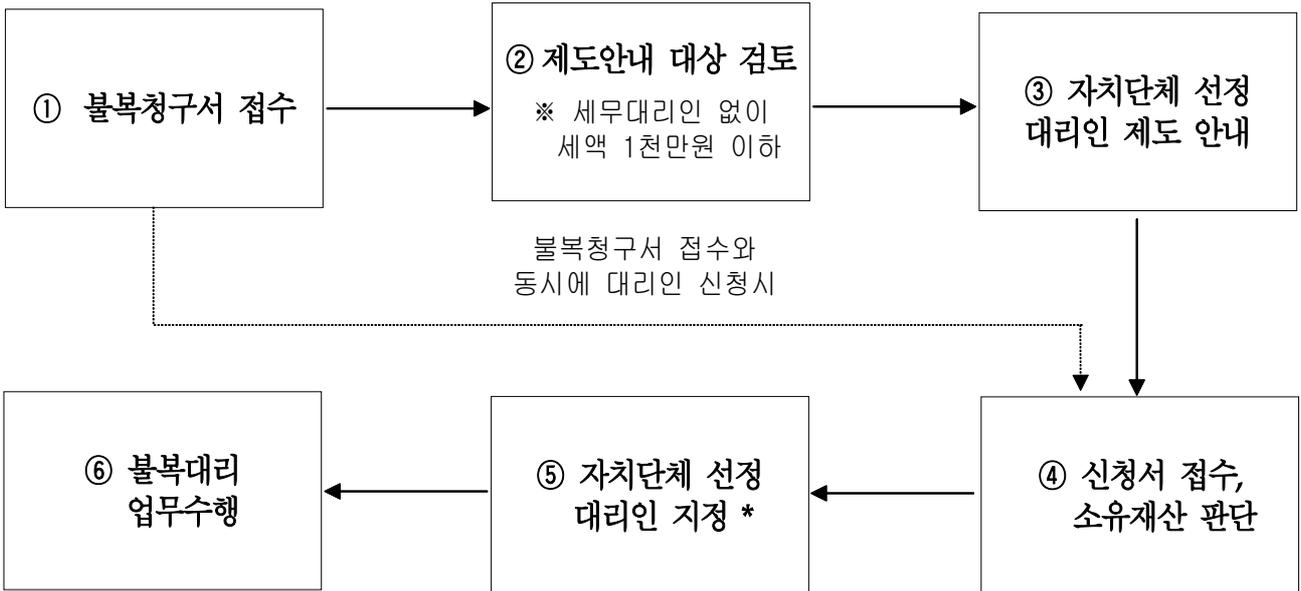
**참고 1**

**국선 대리인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비교**

구 분	국선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3천만원	청구세액 1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u>개인</u>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u>개인(배우자 포함)</u> ※ 단, 고액·상습채납자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u>부동산, 승용차, 회원권</u>
적용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업무 흐름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